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청년 연령의 상한을 39세로 상향〉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455호)

2025. 4.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청년 연령의 상한을 39세로 상향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문수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5. 1. 13.
3. 회 부 일 : 2025. 1.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의 취업, 결혼 및 출산 연령이 높아져 청년정책의 수요대상 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과거와 달리 청년을 규정하는 연령이 상향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만 청년을 정의하는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여 사회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까지 2025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하도록 규정하여 청년지원의 수혜자를 늘리고, 사회적 변화에 부합하는 청년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및 부칙 제2조).

Ⅲ. 검토의견: 청년 연령의 상한을 39세로 상향

- 개정안은 청년 연령의 상한을 현행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하되, 2025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및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 7. (생략)	제3조(정의) ----- -----. 1. ----- 39세----- -----. ----- -----. 2. ~ 7.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의 연령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청년에 대한 연령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9세 이상 35세 이하 2.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9세 이상 36세 이하 3.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9세 이상 37세 이하 4.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19세 이상 38세 이하

□ 현행법은 2020년도에 제정되었으며, 법률 제정 논의 시에 청년 연령의 상한과 관련하여 ‘34세’와 ‘39세’ 안이 있었는데, 논의 결과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되, 기존에 시행 중인 청년정책 사업의 대상자 축소 등을 우려해,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¹⁾

이에 따라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정책 내용이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청년의 범위를 정하여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39세를 청년 연령의 상한으로 설정한 사례도 다수 있음.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회·경제적 약자로서의 청년을 보호하고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의 범위를 확대해, 인천 옹진군²⁾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 조례 중에는 청년 연령 상한을 49세까지 규정한 곳도 있음.³⁾

1) 제371회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2019.11.22.) 소위심사자료, p.19~20

2)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3) 「(이슈와 논점)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 및 일원화 쟁점과 개선 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025.3.20.

< 주요 법령상 청년의 범위 >

법 령		연 령
청년기본법		19세~34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법률	대통령령 위임
	시행령	15세~29세 단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15세~34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대통령령 위임
	시행령(청년상인)	39세 이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15세~34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청년창업기업)		39세 이하
고용보험법 시행령(청년 실업자)		15세~34세

□ 그런데, 청년정책 관련 기본법인 「청년기본법」에서 청년 연령의 상한을 34세로 규정하여 경제적 자립 시기가 늦어지고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개정안은 기대수명 증가, 인구 고령화, 취업·결혼·출산 시기가 늦어지는 추세를 고려해 청년정책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청년정책의 수혜자를 늘리고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청년의 늦어진 사회 진출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는 개정안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연령 범위가 확대될수록 ① 청년 집단 내에서도 사회 경험 등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 연령대별로 다른 특징이 존재하여 단일 정책의 효과성이 낮아질 수 있고, ② 청년정책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역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국무조정실은 청년의 연령 상한을 상향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장·단점이 있으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청년연령 상향에 따른 장·단점 >

장점	▶ 청년정책 대상자 확대에 따른 청년정책 사각지대 축소 ▶ 정책별 연령 차이로 인한 정책대상자의 혼란과 불만 감소 ▶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청년개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변화 반영
단점	▶ 청년정책은 청년의 성인 진입 지원 정책으로 연령 상향시 성인기 진입 지연 ▶ 청년정책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 연령별 특성이 있는 19-39세를 동일 집단으로 분류하여 정책의 효과성 저하

(자료: 국무조정실)

□ 또한, 기획재정부는 현재 일자리·주거·자산형성 등 대다수 청년지원사업 대상이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과 연동되어 추진 중이므로, 지원대상 일괄 확대에 의해 대규모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113